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자 등 관련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 기산점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등 6개 총리령 및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5. 4. ~ 6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”을 “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의 처분내용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(포상금의 지급)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· <u>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</u> 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	제62조(포상금의 지급) ① -----
1. ~ 3. (생략)	----- <u>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</u> -----
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<u>검사의 처분내용</u> 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,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	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</u> -----

지급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제6항 중 “무혐의 불기소처분을”을 “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(해당 결정에 대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)를”로 한다.

별표 17의2 I. 일반기준 제4호 후단 중 “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”로 한다.

별표 28 I. 일반기준 마목 본문 중 “불기소처분”을 “불송치 또는 불기소”로 한다.

별표 34 I. 일반기준 제4호 중 “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”로 한다.

별표 35 I. 일반기준 제4호 후단 중 “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3조(운전면허의 정지·취소처 분 절차) ① ~ ⑤ (생 략)	제93조(운전면허의 정지·취소처 분 절차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
⑥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 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범규위반 에 대하여 <u>무혐의 불기소처분을</u>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, 도로교통공단 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 사기간,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 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 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.	⑥----- ----- ----- ----- <u>혐의없음의 불송치 또</u> <u>는 불기소(해당 결정에 대해 다</u> <u>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</u> <u>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</u> <u>는 제외한다)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제1항 중 “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”을 “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의 처분내용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 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 하여 검사가 공소제기· <u>기소중 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</u> 한 후 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 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(시·도 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 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50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--- ----- ----- ----- <u>기소중 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 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 지)를</u> ----- ----- -----.
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<u>검사의 처분내용을</u>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	②----- -----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</u>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“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”을 “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소권없음 결정,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”을 “공소권없음, 기소중지,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소제기 결정, 기소유예 결정, 그 밖의 결정”을 “공소제기, 기소유예,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”으로 한다.

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)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3조(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1. <u>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</u> : 내부종결 처리.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	1. <u>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<u>공소권없음 결정,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</u> :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,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	2. <u>공소권없음, 기소중지,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3. <u>공소제기 결정, 기소유예 결정, 그 밖의 결정</u> : 별표 1부터	3. <u>공소제기, 기소유예,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</u> -----

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	-----
---------------	-------

총리령 제 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”를 “검사의 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가 있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포상금의 지급방법 등)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<u>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</u> 이 있는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·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가축의 도살·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·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57조(포상금의 지급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검사의 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가 있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 (현행과 같음)

법무부령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3제2항 중 “기소중지결정”을 “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 중지) 결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3(출국정지 대상자) ① (생 락)	제39조의3(출국정지 대상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 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 는 대상자는 사형, 무기,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 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 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 어서 <u>기소중지결정</u> 이 된 외국인 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</u> <u>(피의자중지) 결정</u> ----- -----.